

수업 폐강기준 및 분반 기준 내규

□ 제정 : 1998. 03. 01

□ 개정 : 2014. 11.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강기준) 매학기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다음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폐강한다. 단, 교과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부 폐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 교양과목은 30명 미만을 폐강 기준으로 한다.
2.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을 폐강 기준으로 한다. 단, 예체능 대학의 개인 실기 과목은 예외로 한다.
3. 학과 또는 과목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각 호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분반기준) 교과목 분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 : 80명 이상
2. 전공 : 50명 이상
3. 실험실습과목 : 40명 이상
4. 강의실(실험실습실)의 수용인원 및 교과목의 특성상 분반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9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별 폐강인원 기준

대학명	교양	전공	비 고
중앙대	50명 미만(일반교양 : 80명기준) 35명 미만(외국어 : 50명 기준)	이론 : 20명 미만 실습 : 15명 미만	모집정원이 50명 이하 : 재학인원의 30%미만, 최소인원은 10명이 원칙
성균관대	19명 미만	- 모집정원 30-70명 : 6명 이하 - 모집정원71-199명: 14명 이하	
가천대	30명 미만	15명 미만	모집정원 50명 이하 학과는 모집인원 30% 미만
숙명여대	- 핵심교양 : 20명 미만 - 일반교양 : 30명 미만	- 입학정원 80명 이하 : 10명 미만 - 입학정원81명 이상 120명 이하 : 15명 미만	
한양대	15명 미만	10명 미만	
단국대	영역별 30명 미만, 핵심 10명 미만	10명 미만	
명지대	25명 미만	15명 미만	
용인대	15명 이하	10명 이하	
인천대	30명 미만	10명 미만 or 입학정원 25% 미만	외국어회화, 체육실기 : 20명 미만
수원대	20명 미만	5명 미만	
수원대 변경안	30명 미만	10명 미만	